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 ~ 7.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별표 3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 다음에 “5급 상당(청년보좌역) 1”을 신설한다.

별표 4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 다음에 “5급 상당(청년보좌역) 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⑧ (생 략)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u>11.</u> (생 략) ⑩ ~ ⑱ (생 략)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u> <u>단의 운영지원</u>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⑩ ~ ⑱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5급 상당(청년보좌역)</u>	<u><신 설></u>	<u>1</u>	+1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	•	•	
<u>5급 상당(청년보좌역)</u>	<u><신 설></u>	<u>1</u>	
•	•	•	
•	•	•	